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11. 27 선고 2024가단4414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주식회사 B

변 론 종 결 2024. 11. 13.

판 결 선 고 2024. 11. 27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ㄺ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63㎡를 인도하고,
나. 10,726,120원 및 2024. 8. 1.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9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원고는 변론기일에 청구취지 일부를 감축하였다)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강완수

별지